

自然環境과 국립공원

金 禧 鎮

플라톤을 비롯한 古代희랍의 철학자들은 사람과 그 주위를 둘러싼 자연환경과의 사이에 조화가 이룩된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당시의 인류의 지혜는 자연자체에 保存의 가치가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古代에서 中世를 거쳐 現代에 이르기까지 어떤 종류의 사냥은 귀족계급에게만 허가하고 매사냥을 위해서 독수리나 매를 특별히 보호하며 넓은 지역을 통제하여 일반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켰었다. 이같은 봉건적인 방법은 寡頭정치를 행하는 소수·특권계급의 이익과 환락을 위한 것이었지만 아이러니칼하게도 자연보호에는 얼마큼 공헌하는 결과가 되었다.

봉건 영주들의 일반인 수렵금지가 환경보호에 공헌

이들 지역중에는 몇세기에 걸쳐 통제를 풀지 않는 지역도 있었으므로 그런 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이나 야생동물이 원시 그대로 보존되었다. 가축이 된 소의 선조인 오록크스는 폴랜드의 법령으로 보호를 받아 1627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유럽 바이스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폴랜드의 배로베스슈에서 17세기에 모든 수렵행위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르네상스는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였기 때문에 자연과 그 형성과정의 탐구에 큰 자극을 주었고 또한 이같은 각종 규제, 특히 자원의 개발, 삼림의 벌채, 가축의 방목 등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특정지역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19세기 중반 獨逸의 박물학자이며 지리학자인 알렉산더·폰·훔볼트는 자연의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구상을 하기도 하였다.

이같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갖가지 방법이 몇백년전부터 여러나라에서 강구되어 왔었지만 19세기까지는 동물을 식량원이나 사냥의 대상으로서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후 동물은 동물 자체를 위해, 또 장래의 인류를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소위 수렵할 새나 짐승, 어류뿐 아니라 삼림, 물, 토양에 이르는 모든 자연생태계라고 인식하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모든 자연생태계를 자연보호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최근의 일

자연보호의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그 수단으로서의 대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법을 택한다. 규제의 방법에는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규제하는 경우가 있고 항구적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규제의 대상으로는 지역내의 모든 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와 조류 등과 같이 특정한 생물만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종류의 천연자원의 이용(가령 목재로서 벌채하는 경우)만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규제지역은 公有地뿐 아니라 私有地에까지 미쳤다.

규제를 받는 보호지역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그 설정도 각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행해졌기 때

문에 용어도 통일되지 않아서 가령 국립공원이라 하여도 그 실태는 가지가지라 할 수 있다. 美國이나 캐나다의 국립공원은 대중이 즐길 수 있도록 自然景觀과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英國의 잉글랜드나 웨즈의 국립공원은 사람이 그다지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야생동물의 보호는 「자연보호구」로서 별도로 행해지고 있다. 아프리카의 국립공원은 대개 야생동물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의 설정이나 운영에는 모순이 되는 측면이 있다. 즉 국립공원의 유지에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야생생물의 보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지만 동물들로서는 사람에게 간섭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바람직 할 것 아닌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이 공원안에서의 관광객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예컨대 호텔이나 식당, 주차장 등의 설치장소를 공원내 또는 부근의 일정장소에 지정한다든지 공원내의 도로 폭이나 도로 수를 제한하는 것 등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행정당국과 자연보호당국간에는 적극적인 협력체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관광행정당국과 자연보호당국간의 협력체제 확립건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립공원을 지정한 나라가 美國이면서도 천연자원의 보전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불과 300년사이에 광대한 삼림이 없어졌고, 많은 야생동물이 남획되었으며, 무분별한 자연파괴가 풍요한 국토를 현저하게 황폐화시켰다. 다만 비교적 일찍부터 천연자원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구되어 1872년에 그랜드대통령이 옐로스톤국립공원 설치법안에 서명한 것이 신호탄이 되어 1890년에는 요세미티, 1919년에는 그랜드캐니언 등이 차례로 지정되어 오늘날 50개소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자연자원의 보전·보호에 열을 쏟고 있다.

이웃나라 日本이 공원이라고 일컬어는 것을 맨처음 설치한 것은 1873년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적지를 국유지로 지정한 것 뿐이지 자연보호를 목표로 하는 美國과는 전혀 시각이 달랐다. 다만 美國에서 국립공원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본받자는 주장이 대두되어 1931년에 국립공원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는 주로 산악이나 해안의 경승지를 지정하는 것 뿐이었으므로 1957년에 자연공원법으로 개정하였다. 현재 이 법률이 日本의 공원과 국토보존에 대한 기본 법률인 것이다. 그 내용은 자연의 풍경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며, 국민의 보건·휴양·교화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筆者가 日本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법률의 제정이나 제도가 어떻다는 것보다 그들의 국립공원을 아끼고 섬세하게 가꾸어 가는 관리태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률과 제도보다 관리하는 열성과 이용하는 국민의 자세에 달려

국립공원의 역사도 우리보다 길지만 운센(雲仙), 아소(阿蘇), 닛코(日光)등 어디를 가보나 천연자원 에다 인공을 가해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춘 것을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도 어느나라의 그것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경승을 갖추고 있다. 다만 등산이 붐을 이루면서 너무나 많은 등산객이 줄을 잇는터에 이를 수용할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불편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천연자원 자체를 훼손하는 안타까운 양상이 지적되고 있다. 가꾸고 다듬으면 결코 어느나라에도 뒤떨어지지 않을 천연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노력 부족으로 이같은 현실이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금수강산」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금수강산을 만들어가는 결의와 성실한 실천이 아쉬운 것이다.

[筆者: 本會理事·韓國經濟新聞 論說委員 兼 北韓經濟研究所長]